

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

(앞쪽)

| | | |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 60일 |
| 신청인 | 기관(업체)명 | | |
| | 대표자 | 사업자등록번호(생년월일)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 |
| | 신청 분야 []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[]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[]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※ 해당란에 √ 표시를 합니다. | | |
| 설립목적 | | | |
| 설립 연월일 | | | |

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|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|
| 신청인 제출서류 | 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.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.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| 수수료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 |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